



TaxNewsFlash - Transfer Pricing

[Website](#) | [Archive](#) | [Contact](#)

Transfer Pricing & Customs Newsletter

삼정 KPMG TAX 6 본부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 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발간물 및 Bloomberg 에서 발간되는 BNA Report 를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회 제공합니다. 밑줄 친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OECD 발표자료 및 국제조세/관세 관련 이슈사항 및 동향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 설명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Key contacts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이전가격

홍콩: COVID-19 관련 이전가격 이슈에 대한 지침 발표

2021년 7월 29일 홍콩 과세당국(Inland Revenue Department, IRD)은 COVID-19로 인해 발생하는 특정 세무 이슈사항에 대응하기 위한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COVID-19로 인해 국경이 폐쇄되었고 이로 인해 글로벌 사업환경은 전례 없이 변화되었습니다. 다수의 기업들이 사업운영 방침을 변경하였고 근로자들은 기존 근무지 외의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7월 29일 발표된 IRD의 지침은 법인 및 개인의 납세 거주지,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 해외 근로자들의 근로소득 및 이전가격 관련 세무 이슈에 대한 IRD의 전반적 견해를 간략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IRD의 견해와 접근방식은 2020년 12월 OECD가 발표한 'COVID-19에 대한 OECD의 이전가격 가이드라인'과 일치합니다. 다만, IRD 지침은

삼정 KPMG TAX 6 본부

30 Aug 2021

KEY CONTACTS



강길원 부대표(본부장)

(Tel: 02-2112-0907)



백승목 전무

(Tel: 02-2112-0982)



김상훈 전무

(Tel: 02-2112-7939)

법적 구속력이 없고 IRD의 전반적 견해만을 제공하므로, 각 사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비교가능성 분석

IRD 지침은 COVID-19 기간에도 분석대상거래에 대한 이전가격을 정상가격원칙에 따라 평가하도록 유지하는 OECD 가이드라인을 대체적으로 준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COVID-19로 인하여 기존 사업연도와는 상이한 경제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IRD는 COVID-19기간 동안 비교가능성 분석 수행 시 COVID-19의 영향을 받은 별도의 분석대상기간 적용 및 손실을 기록한 비교대상법인을 포함하여 분석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한된 위험을 부담하는 법인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정상가격범위 내에서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 분석대상법인의 손실 또한 허용될 수 있습니다.

IRD 지침은 또한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은 분석대상거래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OECD 가이드라인 견해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정상가격 사전승인 제도(Advance Pricing Agreement, 이하 "APA")

COVID-19는 예상치 못하게 경제상황에 중대한 변화를 야기하였고 납세자 사업은 APA의 조건 및 상황을 충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IRD 지침은 APA의 철회, 취소 또는 개정을 발생시키는 상황 (예: 중요한 가정의 위반)이 발생하지 않는 한, 기존 APA를 유지하겠다는 OECD가이드라인의 견해를 따릅니다. APA 조건 및 상황에 위반이 발생할 시 납세자는 IRD에 1개월 이내 해당 위반사항을 고지해야 합니다.

체코 공화국: 특수관계자 간의 이전가격 세무조사 강화

체코 공화국의 과세당국은 특수관계자 간의 이전가격 이슈를 중심으로 다루는 세무조사 자료를 발간하였습니다.

체코 과세당국은 2020년 한 해 동안 총 249건의 이전가격 조사를 실시하였고, 법인세 14억 CZK(약 79억 CZK만큼의 과세소득 증가 및 법인세 손실 감소에 기초)를 추가적으로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도의 추가 과세액은 2019년도 대비 4배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최근의 사례에 따르면 체코 과세당국의 과세절차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존에는 체코 과세당국이 COVID-19 이전에 착수한



김태준 상무

(Tel: 02-2112-0696)



윤용준 상무

(Tel: 02-2112-0277)



김태주 상무(관세)

(Tel: 02-2112-7448)



김현만 상무(관세)

(Tel: 02-2112-7542)

조사만 마무리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지만, 최근에는 다수의 신규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착수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부터 체코 과세당국은 이전가격 조사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접근법을 도입하였습니다. 특히 특수관계자 거래 공시를 위해 세금신고서에 별도 부록을 신규 도입하였고, 해당 거래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서 조사대상 법인을 선정하면서 이전가격은 세무조사의 핵심 대상이 되었습니다.

2014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공표된 정보를 토대로 보면, 과세당국은 총 2,431건의 세무조사를 실시했으며, 세무조사 결과 총 469억 CZK의 과세소득 증가 및 법인세 손실 감소가 발생하여 45억 CZK 이상의 추가 과세가 발생하였습니다. 연도별로 변동사항이 존재하나(개별 세무조사 종료 현황에 따라 상이함), 추가 과세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하기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도	추가 과세액 (단위: 백만 CZK)	과세소득 증가액 (단위: 백만 CZK) (법인세 손실 감소분 포함)
2014	59	504
2015	446	2,823
2016	886	13,286
2017	189	1,264
2018	1,216	18,038
2019	356	3,130
2020	1,362	7,861
합계	4,514	46,906

Source: Ministry of Finance

세무전문가들은 체코 공화국의 예산 적자를 감안했을 때 향후 이전가격 관련 조사 건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에 따라 다국적 기업은 주의를 기울여 이전가격 정책을 수립하고 이전가격 책정 방법에 대한 적절한 공식 문서를 구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향후 과세연도(일반적으로 3년)에 대하여 선택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상당한 수준의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는 정상가격 사전승인 제도(Advance Pricing Agreement, 이하 "APA")와 같은 사전적인 대책도 유용할 수 있습니다.

2. 국제조세

처분청이 적용한 이익분할 산출기준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에게 과도한 이익이 귀속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본점의 이익분할 기준과 관련하여 어느 기준으로 이익을 분할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이하 “한국지점”이라고도 한다)은 미합중국 소재 연료서비스 업체인 ○○○(이하 “○○○ 그룹”이라 한다)에 소속된 ○○○(이하 “싱가포르본점”이라 한다)의 지점으로서 2002.11.12.부터 항공 및 선박연료 관련 시장조사 및 정보제공 서비스업(통상 선박유타레이딩 사업을 수행)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3.10. ~ 2016.10.27. 기간 중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싱가포르본점의 한국지점으로서 국내항에서 외항선박용 선박유를 공급(이하 “재판매거래”라 한다)하거나 국외항에서 해외관계사에게 선박유 공급의 중개용역(이하 “중개용역”이라 하고, 이를 합하여 “쟁점거래”라 한다)을 제공한 것으로 보았고, 싱가포르본점과 청구법인 중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을 상대적 인건비를 기준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 5 조 제 1 항 제 4 호에 따라 이익분할법을 적용·산정하는 것으로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2017.2.9. 청구법인에게 2011 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NO	청구법인	처분청
①	청구법인의 선박유 트레이딩 사업의 본질은 싱가포르본점이 동 사업을 영위하고, 한국지점이 동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싱가포르본점과 청구법인의 공동사업이 아니다. 심지어, 청구법인이 없어도 싱가포르본점은 동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이 건 과세 후 청구법인은 실질적으로 폐쇄된 상태이나 여전히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이 사실 자체가 싱가포르본점이 사업의 주체이지 청구법인과 공동사업이	청구법인은 싱가포르본점의 영업지점으로서 가격협상 및 가격확정 권한을 갖고 구매·판매 활동을 수행하고, 싱가포르본점·해외계열사와 함께 수익을 창출을 하고 있으며, 각종 기능이 그룹 전체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므로 고도로 통합된 거래에 적용하는 이익분할법의 적용이 적절하다. 또한 ○○○ 그룹도 이미 내부적으로 관계사간에 거래당사자 간 공헌도에 따라 이익분할법을 적용하여 이익을 배분하고 있다.

	아니라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은 대상 국제거래와 관련하여 열거한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정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선박유 트레이딩 사업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유·무형 자산, 자본, 사업 노하우, 사업 인프라, 위험부담 능력 등은 모두 싱가포르본점이 보유하고 있다.	싱가포르본점의 손익계산서를 분석한 결과, 인건비·접대비 등 인적활동 관련비용이 전체 영업비용의 64%에 이르고, 자본활동 관련비용은 7%에 불과하며, 청구법인의 지점장과 영업사원들은 영업실적에 따라 고액의 성과상여금과 주식보상(Stock Option)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결국 청구법인의 선박유 트레이딩 사업은 인적활동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이므로 인적활동의 수행정도를 가장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표인 '인건비'를 기준으로 상대적 비율에 따라 귀속이윤을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③	인건비만을 이익창출에 공헌하는 요소로 보고, 자본, 자산, 사업 노하우, 사업 인프라 등은 무시한 단편적인 논리에 기한 것이어서 그 자체만으로도 비합리적이다. 청구법인의 영업비용 대비 매출총이익 비율은 청구법인이 속한 ○○○ 그룹의 선박유 사업부의 동일 비율(연결기준)과 유사해야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청구법인의 영업비용 대비 매출총이익 비율이 ○○○ 그룹 선박유 사업부의 동 비율의 2배 내지 3배가 넘는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처분청이 적용한 방법이 비합리적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이익분할 방법에 따른 청구법인의 영업비용 대비 매출총이익 비율이 ○○○ 그룹 선박유 사업부의 동 비율과 대비하여 2배 내지 3배가 넘어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하나, ○○○ 그룹 전체의 지표는 유럽과 북미 등 아시아 외의 시장을 포함하고 있어 비교가능성이 떨어지고, 아시아 시장을 관할하는 싱가포르본점과 한국지점인 청구법인을 비교하는 것이 그나마 비교가능성이 있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원가가산법 보다는 이익분할법에 따라 청구법인과 싱가포르본점의 귀속 이익을 배분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지만,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관여된 거래의 매출총이익을 구한 후, 이를 인건비만을 기준으로 싱가포르본점과 청구법인에 안분하였는 바, 이는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에게 과도한 이익이 귀속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싱가포르본점의 이익분할기준과 관련하여 인건비 외에도 이익창출에 공헌할 수 있는

자본, 자산, 사업 노하우, 사업 인프라 등의 요소를 종합 감안하되 어느 기준으로 이익을 분할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최신예규/판례: 조심2021서2923, 2021.07.27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서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국내사용과 관련하여 지급된 쟁점사용료는 청구법인의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미국에서 설립된 법인으로, 2016.7.30. 당시 자회사인 ○○○ 및 ○○○가 확보 및 관리하고 있던 특허 ○○○ 건에 대하여 AAA 주식회사(이하 “주-AAA”라 한다)와 ‘라이선스 및 부제소 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주-AAA 는 쟁점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에 2016 ~ 2017 사업연도에 특허권 사용대가로 ○○○ 원(이하 “전체사용료”라 한다)을 지급하면서 이를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조세조약”이라 한다) 제 14 조 제 1 항에 따라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합계 ○○○ 원의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주-AAA 가 지급한 전체사용료 중 국내 미등록특허권(○○○ 개)에 상당하는 사용료 대가 합계 ○○○ 원(이하 “쟁점사용료”라 한다)은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하여 2021.2.9. 처분청에 2016 ~ 2017 사업연도 법인(원천)세 합계 ○○○ 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1.4.5. 쟁점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NO	청구법인	처분청
①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는 “외국법인이 특허권 등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그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한미조세조약 제6조 제3항 및 제14조 제4항에서 사용료소득의 원천결정 기준으로 사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사용료소득의 원천지국은 ‘당해 일방국가에서 특허권 등이

	<p>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 VS 한미조세조약 제14조 제4항은 특허 등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사용료라고 규정하며, 동 조약 제6조 제3항에서는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한다.”고 규정이다.</p> <p>「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8조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제93조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한미조세조약을 따라야 한다.</p>	<p>사용되었는지’에 따라 결정되므로 ‘사용’의 개념이 가장 핵심되는 것임에도 이에 관하여 한미조세조약에서는 ‘사용’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p>
②	<p>한미조세조약 제6조 제3항은 “제14조 제4항에서 규정된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동 조항에 규정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용’이라 함은 특허권 속지주의 원칙에 따르면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에서만 존재하는 개념이다..</p>	<p>한미조세조약 제2조 제2항은 당해 조약에서 정의되지 않은 개념은 그 조세를 결정하는 체약국의 법에 따르도록 하는 방법으로 과세권을 배분하고 있으므로 한미조세조약에서 명백히 언급하지 않은 ‘사용’의 개념에 관하여는 원천소득 과세를 규율하는 국내법인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미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서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사용료는 동 법 시행 이후에 지급되었으므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p>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 관세

[- 美 행정명령 신설/Executive Order 14005/시행 2021. 01. 25](#)

[- 美 연방조달규정\(FAR\) 개정/FAR Part 25/시행 2021.07.30](#)

1) 신설 및 개정의 배경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정부조달을 통한 미국 제조업의 재건을 위한 '바이아메리칸 플랜(Buy American Plan)'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 행정명령 14005(이하, 'Made in America')는 그에 대한 후속조치입니다.

'Made in America' 시행 이후에 180일 내에 FAR 의회는 새로운 시행규정을 정책국에 제출해야 하며, 해당 규정에 따라 FAR 의회는 2021년 7월 30일자로 FAR(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개정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Made in America'부터 7월 개정 FAR까지 이어지는 美 행정부의 조치사항들은 연방조달을 통해 제조업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는 보호무역주의의 특성을 띄는 것이고, 그러한 기초는 향후 다른 분야(에너지, 원자재, 정보기술 등) 및 개별 주나 공공기관에 대한 조달에까지 확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주요내용

가. 'Made in America' 및 개정 FAR의 주요 내용은 1)자국산 물품 인정요건 강화, 2)자국산 물품 가격우대 강화 및 3) 자국산 물품 검증방식에 대한 변경입니다.

나. [자국산 물품 인정요건 강화]: 과거 BAA(Buy American Act of 1933)의 국내산 물품 인정기준은 최종품 비용의 50% 이상이었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으로 55%(철강은 95%)로 상향 조정된 바 있습니다. 다만 본 행정명령14005에서 추가적으로 상향 조정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FAR 의회는 2021년 7월 30일 FAR Part 25.003의 개정을 통해, 자국산 물품의 인정기준을 2023년 조달분까지 60%,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조달분에 대해 65%, 2029년 조달분에 대해 75%로 강화하였습니다.

다. [자국산 물품 가격 우대 강화]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내산 제품에 대한 가격 우대 혜택을 12%에서 20~30%(중소기업에 대해 최대 30%까지 인정)로 크게 상향 조정한 데 이어, 본 행정명령에서 추가적인 상향 조정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FAR 의회는 2021년 7월 30일 FAR Part 25.105 및 20.106의 개정을 통해 "Critical Items" 및 "Critical Components"의 개념을 신설하고, 해당 "Critical Items" 또는 "Critical Components"를 포함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기존 가격 우대 혜택(20~30%)에 추가적인 우대요소(Additional Preferential Factor)를 더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라. [자국산 물품 검증방식 변경] 미국 내 생산 및 제조, 미국 내 일자리를 통해 창출된 '가치'를 고려하는 방식으로 기존 '비용'기준의 Component Test 방식을 '부가가치' 기준의 Content Test로 변경하였습니다.

3) 주요 시사점

'Made in America'의 시행으로 국내기업의 美 연방조달시장 진출장벽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가장 우려되는 부문은 연방조달 이외 분야에 대한 바이 아메리카 확대 적용에 대한 부문입니다.

따라서 미국 조달시장으로 이미 진출하였거나 향후 진출을 검토하는 국내기업(예: 배터리소재, 전기자동차 등)은 신설된 'Made in America' 및 개정 FAR에 부합하는 미국산 물품 인정요건을 선제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전략적인 시장진출 전략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특히 자국산 물품 검증 방식이 '비용' 중심에서 '가치' 중심으로 변경됨에 따라, 행정청의 재량권을 활용한 전략적 행정처리방안을 구비할 필요도 있습니다.

KPMG Korea는 BAA, 'Made in America' 및 관련 FAR 분야 전문가를 구비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 중에 있으며, 미국진출을 계획중인 국내기업들을 대상으로 KPMG US와의 Network를 통한 美 조달시장 진출전략 자문 서비스를 활발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 2021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

kpmg.com/app

